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10. 15 선고 2024가단15580 판결 [건물명도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4. 10. 15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강신영

별지